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

)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4. 3. 2008고합1287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유성열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대원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금 50,000,000원을 추징한다.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